

	보 도 자 료		
	보도일시	2021년 6월 29일 10:0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김지영 과장 / 강택신 사무관 / 김진형 사무관 044-201- 6750 / 6764 / 6754
	배포일시	2021. 6. 29. / 총 4매	

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등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

- ◇ ‘환경보건법’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로 지자체의 지역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
- ◇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‘납’ 기준 강화 및 ‘프탈레이트류’ 기준 신설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

- 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지역별 소규모 공장, 소각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환경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 등을 강화한 ‘환경보건법 시행령’ 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 - 이번 개정안은 ‘환경보건법’이 올해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.
- 우선, 중앙정부의 ‘환경보건종합계획’에 따라 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 ‘지역환경보건계획(이하 지역계획)’을 수립하도록 했다.
 - 지역계획에는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, 관할 구역 환경보건 현황, 민감계층,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, 이를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심의·지원할 ‘지역환경보건위원회’와 지역주민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경우 이를 수행할 ‘지역건강영향조사반’을 구성·운영하도록 했다.

- 아울러,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, 주민 등에 대한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.
 - 이 외에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‘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’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.
 -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‘납’에 대한 관리기준(함량)이 현행 600mg/kg(0.06%)에서 90mg/kg(0.009%)으로 강화되고,
 -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(함량 0.1%)했다.
 -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“지자체가 지역 환경보건문제를 세세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,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·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붙임 1.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.
2. 질의/응답. 끝.

◇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(6월 29일 국무회의 의결)

-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규정(안 제2조의2)
 - 시·도지사에게 ‘환경보건종합계획’에 따라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
 -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
 -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·운영(안 제10조의2)
 -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, 운영세칙 등은 환경보건위원회 규정 준용
 -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·운영(안 제13조의2)
 - 환경부에 중앙건강영향조사반, 지자체에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두도록 하고, 담당공무원, 환경보건·인체노출·임상의사 등 관련 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
 -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(안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)
 -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관리 기준을 現 600mg/kg(0.06%)에서 90m/kg(0.009%)으로 강화
 - 프탈레이트류를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합성수지 및 고무 재질 바닥재의 관리물질로 새로이 지정하고 관리기준도 제시
- ※ 기존시설(약 137,286개소) 중 제도 이행 준비가 부족한 업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와 같은 제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유예기간(4.5년) 부여

1. 지자체가 ‘지역환경보건계획’을 수립함으로써 인한 기대효과는?

- 지역 사업장의 인·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직접 관할 구역의 환경 오염 실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지역 내 환경보건 문제에 신속히 대응 가능
 -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 마련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 효과 기대
 - 환경오염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·관리로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장 및 삶의 질 개선

2.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?

-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건강영향조사 지침을 배포하겠음
 - 또한, 건강영향조사의 일관성, 통일성 향상을 위해 주기적 교육 및 정보공유, 경험 있는 권역별 환경보건 전문가 공유, 중앙-지역간 건강영향조사 등을 공동 추진하겠음
- 또한 전국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및 관리자, 지자체, 교육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‘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’ 권역별*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

*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(수도권, 강원권, 영남권, 충청권, 호남권)